제주미래비전연구원 협동조합 인재양성 아카데미

제1강좌 :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협동조합 기본법과 설립절차”

▌ 일시 : 2013. 5. 16(목) 14:00~

▌ 장소 : 제주테크노파크 회의실(10층)

▌ 강사 : 노욱(한살림서울 협동조합상담센터장)

JFVI 제주미래비전연구원
Jeju Future Vision Institute

진 행 순 서

진행 : 김일두(제주대 특별연구원)

❑ 개강식 (14:00-14:10)

- ❍ 개　　회
- ❍ 국기에 대한경례
- ❍ 개회사
- ❍ 격려사

❑ 강　연 (14:10-15:30)

❍ 주제 :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협동조합 기본법과 설립절차”

❑ 질의 및 응답 (15:30-16:00)

강 연 문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협동조합 기본법과 설립절차”

2013. 5. 16

노 욱

(한살림서울 협동조합상담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설립 절차

2013. 05. 16

한살림서울생협
협동조합상담센터 노 욱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

1. 합리성(이기적 본성)의 딜레마

애덤 스미스(1723~1790)

"우리가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각각의 개인(과 기업)들은 다른 누구와 소통 없이 제각기 따로따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이런 각각의 결정들은 누가 일부러 나서서 조정하지 않아도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자유시장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성이다.

가격과 수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여기에 국가나 다른 주체가 영향을 미치면 시장은 왜곡되고 비합리적 결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2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

그런데 과연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사회)에서의 합리성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는 개인이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자유 시장경제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한다.

죄수의 딜레마

「상대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때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사자에게 합리적 최선의 전략은 협조보다는 변절이다.」

		을	
		부인 (협동)	자백 (배신)
갑	부인 (협동)	-1, -1	-7, 0
	자백 (배신)	0, -7	-5, -5

3

합리성(이기적 본성)을 거부하는 힘

죄수의 딜레마에 따르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죄수의 딜레마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대로 항상 상대방을 배신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합리성을 거부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 돕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4

2.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협동조합들

- 농협(축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새로운 기운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정의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정의

협동조합은,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수단)
-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목적)
-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주체)
- 자율적인 결사체이다.(성격,본질)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5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

"룰(Rule)은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이다"

① 법적 근거
- 법률 제11211호 협동조합 기본법(2012.1.26 제정 / 2012.12.1 발효)
- 기본법 하위법령과 협동조합의 자치 법규(정관, 규약, 규정 등)

② 협동조합의 성격
- 사법인 : 국가와 독립된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결사체
- (비영리)법인 : 목적 / 원외이용 금지 / 출자배당의 제한
- 새로운 법인격 :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그리고 새로운 법인격인 협동조합
- 특수법인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③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

	협동조합	주식회사
적용법률	기본법, 개별협동조합법	상법, 회사법
목 적	복리증진, 균형발전	이윤 추구
소 유	조합원	주주
지 분	거래불가, 가치변동없음	거래가능, 가치수시변동
의 결	1인 1표	1주 1표
이 용	조합원	소비자(고객)
잉 여	강한 내부유보, 이용배당 우선	출자배당

6

협동조합의 자치 법규

① 정관
- 총회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최고의 자치법규
- 주요 내용 : 목적, 명칭, 주사무소, 조합원의 자격, 가입 탈퇴, 출자, 조합원의 권리 의무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적립, 사업 및 회계, 기관과 임원, 공고방법, 해산 출자금의 양도, 그 밖에 총회와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규약
- 총회에서 정하며,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자치 법규
- 총회운영규약, 선거관리규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약, 출자금 감소에 관한 규약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규약, 잉여금배당 규약 등

③ 규정
- 이사회에서 정하며, 조직 내부나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법규
- 이사회운영규정, 감사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업무규정, 회계규정 등

7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ICA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정의가 기본법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1) 소유
- 이용자가 소유
- 골고루 출자(30% 이상 출자 제한)

(2)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자본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조직
- 대리인의 자격(가족 또는 다른 조합원)과 최대로 대리할 수 있는 수(1인)
- 대의원총회의 대의원은 조합원에 의해 직접 선출

(3) 잉여금의 처분 방법(성과의 배분)
- 적립 의무 : 의무적립금 10% 이상(분할 불가), 임의적립금
- 이용배당 우선 : 참여한 기여도에 따른 배당 50% 이상 ex) 이용액, 노동시간, 공급액 등
- 출자배당 제한 : 최대배당율은 출자금의 10% 이내

8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ICA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정의가 기본법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

사업체를 통하여
Through enterprise

(1) 수단으로서의 사업
-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봉사
- 투기목적 사업과 일부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금지

(2) 사업의 범위와 제약
- 금융 및 보험 관련업 금지
-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시행 : 특정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등의 요건 충족
- 조합원외 이용금지

(3) 계획과 평가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의 총회 승인과 이사회 집행
- 결산보고서의 제출(감사) 및 승인(총회)

9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ICA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정의가 기본법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1) 조합원은 출자자이자 운영자이며 이용자
- 투자 목적으로 출자만 하는 조합원은 없음
- 일정기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제명 가능

(2) 협동조합의 기관(총회, 이사회, 감사 등) 운영
- 총회(의결기관) : 매년 1회 이상, 7일전 통지,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
- 이사회(집행기관) : 이사장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 이사의 업무집행
- 감사(감독기관) :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이사회에 시정 요구, 이사 소송시 대표권

(3) 정보제공의 의무와 운영의 공개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의 적극적 수행 -> 필수 사업
- 조합원 및 채권자에게 운영 공개(투명성) : 자치법규, 각종 회의록, 회계장부, 조합원명부

10

협동조합의 목적, 동기, 사업에 따른 유형 구분

주된 목적	참여 동기	주된 사업	유 형
조합원의 필요 (호혜적 동기)	생활 소비	공동구매	구매협동조합
		서비스나 자산 이용	이용협동조합
	사업 경영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공동업무 대행	사업자협동조합
	상호 제공과 이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 목적 (공익적 동기)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	의료사회적협동조합

11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관계중앙행정기관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이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이나 국고 등 귀속
감독	감독 없음 법령 위반시 벌칙 또는 과태료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 감독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12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ICA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정의가 기본법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1) 가입 탈퇴의 자유(개방된 조합원제도)
- 조합원의 권리 행사나 이용에 있어서 차별 금지
- 조합원의 자격 규정

(2)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 협동의 효과 : 조합원의 의식적 연대
- 조직력 효과 : 계획 및 조정에 의한 경제효과, 참여의 경제효과

(3) 협동조합연합회 : 3개 협동조합 이상
- 자조, 완결적인 단위조합. 그럼에도 연합회는 왜 필요한가?
- 규모화와는 다른 조직화의 길
-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협동조합 지역사회

13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ICA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정의가 기본법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결사체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1) 육성법이 아닌 기본법
-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시 자율성 침해 금지
-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필요시 지원 가능. 의견 청취

(2)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권
- 자율성을 존중하는 원칙하에 수행
- 감독권의 범위 : 설립인가 및 절차의 적합성, 법령 및 정관 위반여부
- 사회적협동조합의 선인가 후확인 구조. 인가 취소의 사유와 이를 위한 청문

(3) 협동조합에 대한 벌칙
- 징역형 및 벌금형(양벌규정)
- 과태료 규정

14

협동조합 설립 절차

Ⅰ 창립총회 (설립)	Ⅱ 설립신고 (인가)	Ⅲ 설립등기	Ⅳ 사업자등록
발기인모집(5인 이상)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공고(7일전) 창립총회	신고인은 발기인 (일반협동조합) 시도지사에 신고 30일내 필증 교부 (사회적협동조합) 중앙부처에 인가신청 60일내 인가서 교부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출자금 납입 총회의사록 공증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	사업에 필요한 허가, 등록, 신고 등 취득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15

1단계 : 창립총회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
- 발기인회 1차 회의에서 발기인대표 선임. 의사록 기록

② 발기인회에서 정관(안)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작성

- 기재부에서 고시한 표준정관례를 바탕으로 정관(안)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우리의 유형 확인)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 사용할 수 없음)
  동일명칭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에서 "법인" 선택→"상호로 찾기"에서 "전체등기소" "협동조합 법인" 선택한 후 동일지역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
- 창립총회에 부의할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준비
  (필요성과 수치목표, 추진계획과 역할분담, 자금조달과 예산, 기대효과 등 구체적으로 작성)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태와 업종 확인 및 필요한 인허가사항 조사)

③ 설립동의자 모집

-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설립동의자 모집(발기인은 곧 설립동의자)
- 설립동의자는 발기인회에 설립동의서 제출. 발기인회에서는 설립동의자 명부 작성

16

④ 창립총회 공고

- 발기인회(대표) 명의로 창립총회 개최 공고(총회개최 7일전)
- 공고방법은 주사무소 등에 게시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설립동의자에게 통지
- 공고 내용은 ㉠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 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정관 확정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임원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⑤ 창립총회

- 사전 준비 : 설립동의자 명부, 총회 부의안건 검토, 자료집 준비, 참석자 확인, 총회 시나리오 등
-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진행 순서 : 성원 확인, 개회선언, 의사록서명날인인 선임, 의사일정 확정, 의안 심의, 폐회
- 의안심의 과정 : 의안 설명 및 의결주문사항 제시, 동의와 재청, 수정 사항 확인, 의결
- 임원선출 과정 : 임원후보자 추천, 이사와 감사 선출(승낙여부 확인), 이사 중에서 이사장 추천, 이사장 선출(승낙여부 확인)
- 총회의사록 작성 및 서명날인(의장 및 총회에서 선임한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인)

17

2단계 : 설립신고(인가)

① 설립 신고(인가)

- 일반협동조합은 시도별로 설치된 협동조합 신고접수 창구에 접수
  ※ 신고서류 :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이력서와 사진 첨부),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좌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 업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가 신청
  ※ 신청서류 : 설립인가 신청서 + 일반협동조합 신고서류 +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자료 보완 요청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자료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면 외에 현장방문, 인터뷰 등 실질적 심사 진행(사회적기업진흥원 수행)

③ 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교부

- 일반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설립신고필증 교부
- 사회적협동조합은 60일 이내 설립인가증 교부

18

3단계 : 설립등기

① 사무 인수인계
- 신고필증 또는 인가증을 받은 발기인(대표)는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

② 출자금 납입(금융기관)
- 이사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약정한 출자금 납입 / 완납된 날자의 잔고증명서 발급

③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공증사무소)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여 작성(참석자 전원 또는 서명날인인의 인감 등)

④ 등록면허세 납부(구청)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4/1,000이지만 과밀억제권은 3배 중과 + 지방교육세(면허세의 20%)

⑤ 설립 등기(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인은 이사장)
- 등기신청 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공증), 임원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출자금납입증명서,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설립신고필증, 등록면허세영수증
- 등기 항목 : 조합의 명칭, 주사무소, 목적,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은 주소까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연월일
- 등기 항목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함. 변경등기할 사항이 정관 변경사항이면 시도지사에 정관변경 신고를 먼저 해야 하여야 하나 그 외의 사항(예를 들어 임원이나 출자금의 변경 등)은 자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등기를 하면 됨

19

4단계 : 사업자등록

①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취득
- 협동조합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법에서 정한 요건은 만족해야 함
- 우리 협동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취득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의 사항은 관할세무서(민원실) 또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

②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등록시 필요서류는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조합원명부
㉤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20

설립신고 신청 서류(일반협동조합)

①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서식 참조
- 설립신고인에는 발기인(대표)의 이름 기재(이사장이나 다른 대리인이 아님)

② 정관 사본
- 5인 이상의 발기인은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원본은 조합에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의사록에는 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의결권의 위임 여부 등을 기재하고 각 안건별로 의사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작성
- 의사록서명날인인과 선출된 임원의 성명은 기명되어야 하며, 즉석에서 수락하였음을 명기
-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인이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의사록 원본은 조합에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창립총회 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함

21

④ 사업계획서
-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기록
-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별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 사업별로 소요되는 예산 계획을 함께 작성 필요
- 사업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⑤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 임원 명부에는 임원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와 본적지주소 기입
-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여 제출(사진 크기는 가로 3cm × 세로 4cm / 컬러프린팅도 가능)
- 임원의 결격사유, 이사장의 다른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여부, 임직원 겸직여부 등 확인

⑥ 설립동의자명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입(기획재정부 고시 협동조합 업무지침 서식 참조)

22

⑦ 수입 지출 예산서

-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고시 서식에 따라 기록
- 예산서는 사업계획서와 상호 연계되어야 함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설립동의자 명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 기재하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⑨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 등에 게시한 경우에는 게시된 사진을, 우편 또는 메일로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통지문 제출
- 총회의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 창립총회 의결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총회 개최 7일전에 공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3

3. 협동조합 설립상담 사례

한살림서울은 작년 11월부터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협동조합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1,500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 몇가지 상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실제로 설립된 사례는 아님) 협동조합에 어떤 유형들이 있을지, 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참고용으로만 이해해 주세요.

소비자협동조합

- 아파트 주민들의 소비협동조합, 아이돌봄협동조합, 문화센터협동조합
- 자녀보육을 위한 부모들의 공동육아협동조합, 방과후학교를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교육협동조합으로
- 상조(장례사업) 협동조합, 카세어링소비자협동조합, 통신소비자협동조합
- 주택을 공동으로 건축, 유지보수, 관리하는 주택소비자협동조합
- 여행 동호회 회원들이 공동 운영하는 트레킹여행협동조합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공동구매나 공동의료를 위한 반려동물협동조합

24

3. 협동조합 설립상담 사례

사업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은 개별사업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연합체적 성격을 가지며, 주요 사업으로는 원료나 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관리, 공동생산, 공동수주, 브랜드통일(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임

- 자전거 생산협동조합, 전통주류 생산업자들의 협동조합
- 약사, 건축사, 행정사, 부동산중개사, 포크레인기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협동조합
- 카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동네빵집 협동조합, 편의점 점주들의 협동조합
- IT관련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웹 에이젼시 협동조합
- 주얼리제품상가, 동대문 의류상가, 제기동 전통한약상가, 화훼상가, 혼수용품상가, 악세사리상가 등에서의 상인협동조합
- 창신동 봉제, 광장시장 한복, 수제화 또는 가죽제품 생산업체 등의 판매협동조합
- 인사동 한지공예, 국악기 유통, 염색 및 도색 등 음악, 미술 및 공예분야 협동조합

25

3. 협동조합 설립상담 사례

직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은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발성과 창조성이 중요한 예술영역이나 기술집약적 또는 지식집약적 분야가 많음

- 외국어교육, 방과후교육, 학습지교사, 생태학교, 멘토학교 등 각 분야별 강사 협동조합
- 기술학교 졸업생들의 음식업협동조합, 공방 학생들의 공예협동조합
- 대중음악, 국악, 성악, 오케스트라, 무용단 등의 영역별 공연 또는 기획사 협동조합
- 작가, 시조작가, 평론가, 화가, 조각가, 사진사 등의 창작, 전시, 출판 협동조합
- 독립영화 제작, 인문학 연구, 역사문화 연구 등을 위한 협동조합
- 홍보 마케팅, 리서치, 상담치료, 헤드헌팅,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의 협동조합 사업체
- 북클럽카페, 식당, 마을도서관 등을 운영하는 노동자협동조합
- 도시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협동조합, 전통예절과 놀이를 가르치는 어르신들의 교육 협동조합
- 가사노동, 보육, 건물관리, 이사, 청소, 경비(경호) 등 다양한 용역 제공 협동조합

26

3. 협동조합 설립상담 사례

사회적협동조합

- 교육계에 종사하다 정년퇴직한 시니어들이 중심이 되어 평생교육서비스 제공
- 지적장애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사업단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 7080 문화공연단, 장애인 문화공연단(공연, 영화, 여행 등)
-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인디아트거리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 남북한 청년들의 통일을 준비하는 협동조합(통일교육, 여행, 물자교류)
- 노숙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취약계층의 자활 복지 협동조합
- 인터넷방송의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 대상 음악프로그램 공급자들이 꿈꾸는 협동조합
- 장애아 부모들이 자녀의 자활과 노동을 위해 만드는 카페협동조합
- 서아프리카 예술을 한국에 알리고 문화교류를 넓히고자 하는 청년들의 협동조합
- 어린이 축구단, 프로 축구단

27

협동조합 설립 인가(신고) 현황

2013. 4. 30 현재

구 분	신청(신고)건수	인가(수리)건수
사회적협동조합	62	24
일반협동조합	1,025	919
일반협동조합연합회	5	3
계	1,092	946

(기획재정부 자료)

“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

– 스테파노 자마니 –

28

부 록

협동조합 Q&A

(부 록)

협동조합 Q&A*

한살림서울생협 협동조합상담센터 노 욱

1. 협동조합 설립 절차

● 설립동의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조합원과는 다른 사람인지?

⇒ 창립총회 전까지 설립에 동의하여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창립총회의 성원임. 조합이 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자연적으로 조합원이 됨(설립 이전에는 설립동의자, 설립 후에는 조합원)

● 창립총회 공고기간이 법으로는 정해져있지 않은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적절한 공고 방법은?

⇒ 7일전에 공고할 것을 권장(표준정관례 참고)

⇒ 공고는 설립동의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엇이든 가능함. 설립동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별 통보하면 됨

⇒ 게시한 경우에는 게시된 사진을, 우편 통지시에는 등기우편 영수증 사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한 통지시에는 통지한 내용이 보이는 화면을 인쇄하여 증빙자료로 사용(공고내용 및 공고일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창립총회를 공고했는데 장소를 갑자기 변경할 수 밖에 없게 됨. 다시 1주일 기간을 두고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 일시가 바뀐 것이 아니며 설립동의자가 소수이고 직접 연락이 가능하면 새로 창립총회 공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개별통지 등을 통해 바뀐 장소만 정확히 안내하면 됨

● 협동조합 정관에 주소를 모두 기입해야 하는지? 출자금 총액도 넣어야 하는지?

⇒ 주소는 모두 기재. 출자금 총액은 일반협동조합에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기재해야 함

● 협동조합은 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법인이 임원(이사나 감사)도 될 수 있는지? 된다면 그 법인 자체가 권한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는지?

⇒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음. 필요하다면 법인을 대표하는 개인

---

* 이 자료는 그동안 한살림서울 협동조합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진 실제 상담사례이며, 일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생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오류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을 임원으로 선출할 수는 있을 것임. 그 개인이 조합원이 아닐 경우에도 정관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범위에 해당되면 가능함

●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정관에서 정하면 또는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인지? 신용불량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미성년자도 기본적으로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임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음. 단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신용불량자도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음.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을지?

⇒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공무원법에서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있음. 따라서 다른 유형은 문제 없지만 직원협동조합 유형이라면 조합원이면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되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임.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이더라도 협동조합의 사업이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관계된 공무원은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또 임원도 될 수 있는지? 임원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임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음.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국내에서 인감을 만들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 대의원총회의 경우 최소대의원수를 정한 법 규정이 없는데, 대의원의 수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대의원 선출방법을 정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

⇒ 대의원수는 50명 이상을 권장함(표준정관례). 대의원 선출에 대한 내용은 정관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규약으로 정하고 있음(대의원선출규약). 선출 방법은 조합원의 구성과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어야 함

● 주사무소가 필요한지?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지?

⇒ 주사무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합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없어도 됨. 발기인 개인의 집이나 다른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단 건물주의 무상사용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임

● 정관에 임원의 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지? 이사회 의결사항에 임원보선권을 넣어도 되는지? 등기하지 않은 임원도 있을 수 있는지?

⇒ 임원의 수는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되, 정확한 정수를 기재하지 않고 일정 범위로 정할 수도 있음.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몇 명의 임원을 선출할지는 임원선거공고를 통해 알림. 선출된 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이사회에서 임원 보선을 할 수는 없고 총회에서 해야 함(총회때까지는 결원 상태) 등기하지 않은 이사는 있을 수 없음(외부적으로 인정받지 못함)

● 설립동의자 명부에 동의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지?
⇒ 설립동의자 명부는 발기인회에서 작성하는 것이며 서명날인을 받는 것은 아님.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서(설립 이후는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조합에 제출하며, 조합은 이를 보관하여야 함

● 창립총회 의결사항 중 '설립경비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지?
⇒ 설립 전에 사용된 비용을 협동조합의 경비로 인정할지 등을 묻는 절차를 말함. 설립 비용을 모단체나 발기인회 등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별도로 의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출자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 출자금납입서류는 등기시에 필요한 것이며, 약정한 출자금이 모두 납입된 날짜로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수치 계획을 포함해야 하는지? 수지예산서에 출자금, 차입금은 무엇을 말하며, 수입과 지출 총액의 차이가 발생해도 되는지?
⇒ 사업계획서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수치계획도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임. 수지예산서의 출자금은 연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출자총액을 말함. 수지계산서에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는 지출항목 중 차기이월금 항목에 차액을 표기하여 합계액을 맞춤

● 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이제 설립신고를 하려고 함. 신고서류 접수는 어디서 받는지?
⇒ 주사무소가 서울시인 경우는 현재는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음. 먼저 접수지원 창구에서 서류 검토를 받고 접수창구에 접수함. 이후 조례에 따라 신고접수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될 수 있음

● 협동조합을 창립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 이제 약정한 출자금을 받고 있는데 한 조합원이 약정은 1좌였는데 2좌를 입금함.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실수가 아니라 출자를 더 하신 것이라면 받으면 됨. 다만 설립등기시 출자금액을 증빙하는 잔고증명서 금액과 맞추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음(조정이 어려우면 다른 통장에 잠깐 넣어두었다가 잔고증명 이후 출자통장에 입금?)

●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협동조합을 별도 구분하는 분류체계가 만들어지는지? 설립된 협동조합을 공시하는 곳이 있는지?

⇒ 협동조합은 법인등록번호를 구성하는 분류번호를 51번으로 부여받게 되어 구분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나 업태, 등록번호 등에서는 별도의 구분이 없음. 등기소에는 협동조합 등기부가 별도로 설치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 경영공시자료를 공개하게 되어있음

● 협동조합을 등기할 때 설립등기신청서 양식이 있는지?

⇒ 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는 지역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자료센터 - 파일양식다운로드 - '법인등기'에서 '협동조합' 검색)

● 협동조합 등기는 사단법인처럼 주사무소 지역 등기소에 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처럼 상업등기소에 하는지? 임원을 등기할 때 주소도 표시해야 하는지? 등기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등기를 할 때 서울시에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고 확인증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증빙서류만 가지고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 협동조합은 주사무소 관할 지역등기소에 등기함. 일반 임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지만 이사장은 주소까지 등기됨. 변경등기할 사항이 정관변경 사항이면 서울시에 정관변경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하나 그 외의 사항(예를 들어 임원이나 출자금의 변경 등)은 자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등기를 하면 됨

●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임원 중 한 분이 사정이 있어 사임을 했고 인감도장도 받을 수 없어 의사록 공증을 할 수 없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임원은 자의에 따라 사임할 수 있음. 지금 문제는 의사록 공증의 문제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공증사무소와 확인하여야 함(공증을 위해 참석자 전원의 인감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의사록서명날인인의 인감만 요구하거나 아예 인감을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음). 임원으로 등재할 때는 인감을 꼭 요구하는데, 사임하신 분은 등기하지 않으면 될 것임(신고 또는 인가부처와는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음) 만약 사임으로 인해 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요건(이사 3인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갖추지 못하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다시 해야 할 필요도 생김

●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 먼저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영리사업체로 보므로 자본금의 4/1,000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은 3배인 12/1,000임을 납부함. 그 외에 지방교육세로 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하며 증지대 3만원, 기타 소액의 서류발급비용이 소요됨. 등록면허세 등은 구청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함

2. 협동조합 전환

● 현재 주식회사 형태로 있는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사업목적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기존 법인의 정관을 지금 바꾼 후 협동조합으로 전환해도 되는지?

⇒ 협동조합 전환은 기존 조직의 형태가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운영된 곳에만 해당된다고 이해해야 함. 정관이나 내부규정 등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2012년 12월 1일 이후 개정된 것은 효력이 없음

●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함.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사는 기존 회사의 이사가 계속 해도 되는지? 이사장은 두 명을 선임해도 되는지?

⇒ 기존 주식회사의 전환총회와 새로운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거쳐야 함. 주주의 주식비율 조정, 채권자의 동의, 기존 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처리방안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음. 협동조합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설립동의자의 의결로 선출되며 기존 회사의 임원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임. 복수의 이사장은 인정되지 않음

● 마케팅광고회사(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데,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싶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개인사업자)이므로 협동조합으로 전환은 어려움.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필요하면 기존 사업체의 권리나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이 좋겠음

● 주식회사를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 명칭을 유지할 수 있을지?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이 있으면 같은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음. 다른 형태의 법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협동조합법인으로 등기할 수 있음(등기부가 다름)

3. 협동조합의 운영과 경영

●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조합원은 주사무소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지?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의 제한이 없음. 다만 거래가 발생하는 곳에 사업장을 설치해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하지만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업무구역을 제한하고 있는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및 인접한 시도까지라고 볼 수 있음. 어떠한 유형이든간에 조합원의 거주지는 관계가 없음

● 주식회사이며, 이번에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함.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모든 직원에게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임. 선

호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약에 따라 설치할 위원회의 종류, 역할, 위원선임 등의 내용을 정함.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설치하며 기본적으로는 이사회를 자문하는 역할임. 따라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나 능력이 있는 조합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이사회가 위촉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직원협동조합의 모든 직원이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지? 사무국 직제와 중복 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위원회를 정하고, 그 취지에 적절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음

● 협동조합 설립 후 계속되는 적자나 그 결과로 파산 등을 하게 되면 조합원은 어떤 피해가 있고, 채권자는 어떻게 책임을 묻나?

⇒ 결손이 발생되면 일단 이월손실금으로 이월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합원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원칙임. 계속되는 결손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통해 출자 감소를 하거나 최종적으로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유한책임제) 채권자는 법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며 채무불이행시 민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

● 초기에 경영이 어려워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입회비를 받아 사무실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자협동조합에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회비로 내게 해도 되는지? 자체적으로 연금사업을 할 수 있는지?

⇒ 협동조합의 자산을 구비하기 위해 모으는 것은 출자금이며, 탈퇴할 때는 돌려주어야 할 금액임. 일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매출이익이나 기타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이 수입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외수익에 속하며, 기본적으로는 사업수익이 있어야 함. 사내 연금사업은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함

● 사업 초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예상되는데 문제 없을지?

⇒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 규모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함. 하지만 사업 초기에 투자 성격의 비용이 많다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문제는 그 적자를 어떠한 계획에 따라 해소해갈 것이며, 그 계획이 현실 가능하도록 조합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임

● 소설이나 만화 작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인터넷연재나 출판사업 등을 할 수 있을지?

⇒ 협동조합의 수익모델이 있어야 할 것임. 작가들의 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창작물이므로 매입매출의 거래관계가 형성되기보다는 수수료 방식으로 사업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음.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출판사업 외에 다른 부대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창작교실, 문화카페 등)

● 임원이면서 직원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직원협동조합과 조합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에서는 임직원 겸직이 가능함. 그

외의 경우는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근 임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실비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임원에게 보수를 주는 것과 임직원 겸직은 별개의 문제임

● 출자배당시 먼저 가입한 조합원과 새로 가입한 조합원의 차이를 둘 수 있는지?

⇒ 초기 조합원과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이 가입이나 이용시에 차별을 둘 수는 없음. 배당도 마찬가지이나 다만 가입시기를 고려하여 월좌수를 기준으로 출자배당금을 계산할 수는 있음(배당에 관한 규약이 있어야 함)

● 창립 이후 기존 조합원이 출자금을 증좌하거나 신규조합원이 출자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본금 변경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가?

⇒ 신규조합원 가입은 계속될 수 있으며, 기존 조합원의 증좌도 있을 수 있음. 그에 따라 출자금도 늘어날 것임. 기본법에서는 출자금 변경은 변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음(단, 변경될 때마다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말의 최종출자액을 1개월 이내에 등기함) 정관 변경사항은 아니므로 서울시에 신고할 필요는 없음. 다만 등기소에서는 출자금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는 아직 모르겠음(세무사의 재무제표 확인서 정도면 어떨지?)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를 생협처럼 생략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임

● 현물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물출자자도 1좌 이상의 현금출자를 해야 하는지?

⇒ 현물출자는 정관에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가능한데 보통은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을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으로 정하게 되어있음. 총회에서 해당 규약을 제정하면 그 규약에 따라 현물출자를 할 수 있음. 현물출자의 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절차와 현물출자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함. 현물출자를 하면 별도의 현금출자는 하지 않아도 됨

● 표준정관에는 출자금 납입시 2회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3회로 늘려도 되는지? 예를 들어 1회 10%, 2회 40%, 3회째 50%로 해도 되는지? 납입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로 늘려도 될지?

⇒ 정관에 의해 출자금 분납은 할 수 있으나 1회 분납시 먼저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므로 10%만 출자해도 자격을 주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또 납입기한이 너무 길어도 바람직하지 않음. 분납을 3회 이상으로 하더라도 1회분은 50% 이상 하도록 하고, 납입기한도 최대 당해년도 말까지로 해서 다음년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조합원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양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망시에는 자녀에게 지분이 상속되는지?

⇒ 기본적으로는 조합원의 지위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보통 총회 승인을 얻는 경우는 사망시 탈퇴처리하지 않고 상속인

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정이 생겨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임.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신규로 가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가입절차를 밟아야 함

4. 사업의 종류와 사업자등록

● 약사들이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약품 공동구매사업(의약품 도매업)을 하고자 하는데,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특정 약국에만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외 이용금지 조항과 충돌되고 있음(협동조합 기본법과 약사법의 충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협동조합에서도 특정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함. 의료분야의 특수성이 있어서 약사법에 해당 규정을 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관부처에서 약사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임. 몇 군데 약국이나 협동조합 차원이 아니라 약사협회 등 힘있는(?) 단체가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해야 효과가 있을 것

● 협동조합에서 여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 협동조합의 사업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보험업과 금융업 제외) 특정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하면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함. 여행사업은 국내여행업은 3천, 국외여행업은 6천, 일반여행업은 2억의 자본금이 필요함

● 안경 관련 사업자들이 공동판매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함. 신고서류에 업종과 업태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 업종은 안경소매업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세무서에 문의 필요. 문제는 업종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해당 업종을 위한 인허가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안경소매업은 안경사면허증이 필요하며 지역보건소에 등록해야 함. 등록하려면 5평 이상의 청결한 공간과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 갈수록 줄어드는 농지를 보전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직접 또는 (귀농희망자에게) 임대하여 영농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이 영농을 위해서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협동조합 자체로는 농지 구입이 불가능함. 정부에서 올해 10월경에 농업회사법인의 유형에 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관련법(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형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구입할 수는 있을 것임.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도시소비자로만 구성할 수는 없고 농업인이 1/2 이상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선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음. 협동조합에서 법률서비스나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

⇒ 변호사법 등에서 법률서비스 제공 자격자를 정하고 있다면 그 자격을 만족해야 하므로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협동조합에서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데,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에게 임대하고 공동 관리를 하고자 함. 협동조합에는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가 없는가?

⇒ 주택협동조합의 취등록세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우선 협동조합이 토지 매입과 주택 건축을 하면서 취등록세를 납부한 후에 다시 조합원이 분양을 받을 때 또 한번 취등록세를 내야 하므로 같은 건으로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됨. 또한 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인구과밀지역에는 3배 중과세까지 부담해야 함. 주택분야도 협동조합에서는 중요한 영역인데 이러한 세율은 주택협동조합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정도임. 기본적으로 주택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도록 관련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으로 경비업도 할 수 있는지? 이후에 연합회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개인도 가입이 가능한지?

⇒ 경비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함(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 1억 이상이고 그 외 필요한 요건 갖추어 지방경찰청에 허가 신청) 연합회는 등기된 협동조합만 가입이 가능함

● 응급환자 이송업(사설응급차)을 하는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음. 직원협동조합 형태로 만들기로는 했는데, 당장 사업을 위한 인가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운 상태임. 일단 법인만 설립하고 사업은 나중에 해도 되는지?

⇒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최소출자금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사업을 위해 요건이 필요하면 충족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응급환자 이송업은 예치금 2억과 특수차량 5대 등이 필요) 특수차량을 직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법인 명의로 현물출자도 가능하나 객관적으로 가액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함(세무사 도움이 필요할 것) 일단 법인만 설립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가능은 함. 법인 설립이후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그 기간이 짧아야 할 것임

● 시각장애인인 안마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안마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의료법에서 안마원은 법인이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음. 개인이 혼자 투자하여 안마원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 부담이 커서 협동조합 방식이 좋다고 생각되어 그동안 협동조합 교육도 받았는데 법의 제한을 받게 된 것임. 안마사협회는 법인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반대의견도 있어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먼저 당사자들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현행 제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지?

⇒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협동조합에서 안마원을 운영할 수 있음. 먼저 협회 내부에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주변에 도움 줄 분들을 활용해서 여론을 조성하면 좋겠음

●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은 관할세무서(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상담번호 126번으로 문의해도 됨

5. 유형별 상담 사례

<소비협동조합>

● 협동조합에서 비조합원 이용금지 조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데 실무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는지? 가입하면 조합원의 권리나 의무가 동일한데 외부의 불순세력이나 원치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비조합원 이용금지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
⇒ 일정규모가 되면 생협처럼 조합원 가입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전산)을 갖추어야 할 것임. 원치않는 사람이라도 조합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가입을 제한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음. 단 최소한의 조합원 자격을 정관에 명시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수에 의해 조합 운영이 좌우되지 않도록 민주적인 절차와 훈련을 보강해가야 함(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비조합원 이용에 대한 제제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협동조합 희망.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용고배당은 어떻게?
⇒ 조합원의 구성에서 소비자가 포함되면 조합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조합원이 많아야 하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는 소비협동조합의 성격을 갖게 될 것임. 조합원의 동질성을 명확히 하여 주된 조합원이 생산자인지, 직원인지, 소비자인지를 정해야 할 것임. 소비협동조합의 이용고배당은 보통 해당조합원의 구입 비율로 계산함

● 직원이 약 300명인 법인인데 회사 1층에 카페를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함. 협동조합으로 가능할지? 회사법인도 조합원 될 수 있는지? 법인이 출자를 많이 해도 되는지? 수익금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 직장 내 소비자협동조합 유형으로 설립할 수 있음. 단, 비조합원 이용금지에 유의. 회사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가능한 출자금은 총출자금의 30%까지만 가능. 회사 직원인 조합원의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어 총회 의결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잉여금 처분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직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에서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용에 따른 배당이란 무엇인지?

⇒ 직원협동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의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며, 결산 후 잉여금 처분을 할 때 배당하는 방법도 있으나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음. 이용에 따른 배당이란 이익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배당한다는 의미이며, 조합원의 이용율을 정의하는 내용을 규약으로 정해야 함(배당에 대한 규약)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이용율은 보통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내용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찾아도 좋을 것임

● 마을카페 등을 직원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사업규모가 작아 직원수가 조합원의 2/3 이상이 되기도 어려움. 어떤 방법이 있을지?

⇒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직원이며, 근로형태는 다양할 수 있음(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가능) 사업규모가 작아 정규직으로 하기 어렵다면 일부는 일용직 형태로 시작할 수 있음(일을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 유급직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함. 단,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는 희망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식당이나 레스토랑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경우 비조합원 이용금지가 어떻게 적용되나?

⇒ 직원 또는 사업자 협동조합이 판매하는 것은 조합원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에 문제 없음(노동 또는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조합원 이용임)

● 유산으로 받은 땅에 형제들이 함께 일하는 어린이집을 만드려고 함. 협동조합 형태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직원협동조합 형태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끼리 하는 사업이라면 굳이 법인으로 만들어 여러가지 행정적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듯.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시길 권유함

<사업자협동조합>

● 사업자협동조합에서 이용에 따른 배당은 어떤 의미인지? 초기에 고생한 조합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신규로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기존 조합원이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가능할지?

⇒ 이용고 배당은 잉여 발생의 공헌도에 따라 배당한다는 것이며, 공동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한 금액(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보통임.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가입 및 이용시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음. 다만 정관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기존 조합원과의 상권 갈등 등의 이유로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됨. 하지만 그렇게 자격을 제한해도 될지는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판례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처음에는 사업자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한 후 이후에 소비협동조합 또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바꿀 수 있는지?

⇒ 사업자협동조합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함. 단, 정관에서 조합의 목적이나 조합원 자격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된 정관을 시도지사에 변경신고해야 함(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는 없음)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이해관계자별로 대의원수를 적정한 비율로 정해서 선출해도 1인 1표 원칙에 문제가 없을지?

⇒ 정관이나 규약에 대의원선출기준과 방법 등을 정해 놓으면 가능함. 몬드라곤 에로스키에서는 직원대의원 50%, 소비자대의원 50%로 대의원총회를 구성함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부과금 면제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과금이란 무엇인지?

⇒ 일반적으로는 별로 관련이 없으나 부과금과 관련이 많은 업종에는 큰 혜택이 될 수도 있음. 부담금의 예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건설비용 부담금(주택),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물이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재건축부담금 등등(기획재정부의 '2011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참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기시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나?

⇒ 원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 '총회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해야 하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가 신청을 할 때 같이 공증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됨. 소관부처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인가증을 발급하면서 법무부(법무과)에 총회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서류를 보낼 수 있음. 법무부 판단에 의해 '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 고시에 포함되면(추가고시), 해당 조합은 등기신청시 공증문서 대신 법무부 고시를 내면 됨

※ 일반협동조합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의사록 공증은 설립신고나 인가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법인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문제임.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그 기간 안에 제외대상 법인인지를 판단하고 추가 고시까지 해 줄지가 문제. 현실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할 때부터 인증제외법인으로 고시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됨

● 협동조합에서 후원을 받을 때 세금 문제는?

⇒ 협동조합에 후원하는 기부금이 비용처리가 되려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기부금인정단체가 되어야 함. 법인 인가와 별개로 기부금인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에 신청해야 함. 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은 기부금인정단체로 인정되지 않음

● 처음에는 일반협동조합으로 신고하여 사업을 하다가 일정시점 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의 전환은 불가능함. 기본적으로 설립 기준이 다르기 때문.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할 때에는 신청 서류의 내용이나 방문면담 결과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지만(즉 사업내용을 보고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만을 보고 먼저 인가를 내 주는 것임), 1년 후 사업 결과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성립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 접수처는 어디인지? 신청자가 정확히 어느 부처에 해당되는 사업일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지?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권한은 소관 업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음. 따라서 접수처는 각 소관부처이고, 신청하는 조합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인가를 신청해야 함.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다수의 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면 주사업의 소관 부처에 신청하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는 인가신청 부처를 잘 모를 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겠음.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신청하면 소관부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업무위탁을 하여 신청 조합을 현장실사하도록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함

● 독거노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자원봉사로 장례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옴(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과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봄. 장례지도사 뿐만 아니라 요양복지사, 사회복지기관 등과 함께 연계하면 좋겠음. 현재는 자원봉사지만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해야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의미가 있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부담스러우면 기존에 노인돌봄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결합해서 활동하는 것도 좋겠음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 보건의료분야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률이 2개인 상태(생활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중 사회적협동조합 부문)인데, 적용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

⇒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설립과 운영 요건이 더 강화되어 있음. 생활협동조합법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3년 중에는 기본법과 체계를 맞출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생협법 개정시 경과기간을 두어 강화된 요건에 따라 전환하던지 아니면 해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 의료부분의 독특한 성격(공공 영역), 유사의료생협과의 구분, 의료이용자를 소비자로 이해하는 것의 난처함 등의 이유로 의료생협연합회에서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MEMO

MEMO